

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03. 12. .
제출자 구미시장

□ 제안사유

- 구조조정 등으로 정원을 승인받지 못하고 한시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, 시민복지회관 복지관운영담당, 실업대책반장, 4공단투자유치 지원인력,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등 일부 정원의 시한이 도래되어
-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자체인력 조정이 가능한 6급이하 정원은 상시정원으로 운영하고, 초과정원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행정5급의 정원은 감축 조정코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정원감축 : 행정5급 △1명(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)
- 상시정원 : 20명(6급4, 7급3, 8급4, 9급3, 기능8급1, 기능9급2, 기능10급3)

구분	계	일반직				기능직			한시 시한
		6급	7급	8급	9급	8급	9급	10급	
계	20	4	3	4	3	1	2	3	
체육시설관리사무소(운영담당)	6	건축 또는 행정1	건축1	전산1 기계1	임업1			통신1	'03.12.31
시민복지회관(근로자종합복지관)	8	행정1	행정1		행정1	기계1	사무2	난방1 위생1	"
실업대책반장	1	행정1							"
정보화사업추진	2			전산1	전산1				'04. 6.30
4공단투자유치지원	3	행정1	행정1	건축1					'04.12.31

□ 참고 사항
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
- 도 정통12410-10941(2003. 11. 6)호 『시군정보화사업』 추진 한시정원 조정 권고

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1,383”을 “1,382”로 하고 동조제1호중 “1,358”을 “1,357”로 한다.

조례제442호(2000.12.30)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②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정원 7명중 6명과 시민복지회관(근로자종합복지관) 정원 8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시행하고,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정원 1명(행정5급)은 감축하되 감축되는 정원에 초과현원이 있을 경우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조례제503호(2003. 1. 9)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제1항, 제2항,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①이 조례 시행으로 집행기관의 실업대책반장(행정6급)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되, 2004년 1월 1일부터는 행정6급을 상시정원으로 시행한다.

②이 조례 시행으로 정보화사업 추진인력으로 보강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되, 2004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시행한다.

④이 조례 시행으로 4공단투자유치 지원인력으로 보강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3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되, 2004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(생략)	제1조(목적) (현행과 같음)
제2조(정원의 총수) 구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<u>1,383명</u> 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1,382명</u> ----- -----
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358명</u>	1. ----- : <u>1,357명</u>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5명	2. (현행과 같음)
조례 제442호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 부칙	조례 제442호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 부칙
제2조(한시정원)	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
①(생략)	①(현행과 같음)
②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정원 <u>7명</u> 과 시민복지회관(근로자종합복지관)정원 8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.	②----- ----- <u>7명</u> 중 <u>6명</u> ----- ----- ----- 존속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시행하고,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정원 1명(행정5급)은 감축하되 감축되는 정원에 초과현원이 있을 경우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조례 제503호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 부칙	조례 제503호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 부칙
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	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
①이 조례 시행으로 <u>실업대책반장</u> (행정6급)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되, 2004년 1월 1일부터는 행정9급으로 환원한다.	①----- <u>집행기관의 실업대책반장</u> ----- ----- 한시적으로 존속하되, ----- 행정6급을 상시정원으로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②이 조례 시행으로 정보화사업추진 인력으로 보강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. ③(생략) ④이 조례 시행으로 4공단투자유치 지원인력으로 보강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3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.	②----- ----- -----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되, 2004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시행한다. ③(현행과 같음) ④----- ----- -----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되, 2004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시행한다.